

보도시점 2025. 10. 21.(화) 10:00 / 배포 2025. 10. 21.(화) 08:30

##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관련 10개 국내·외 항공노선 이전 절차 개시

-인천-시애틀, 인천-괌 등 10개 노선에 대한 대체항공사 선정 절차 시작-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에 따른 구조적 시정조치의 일환으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독과점 항공노선 중 10개 노선을 다른 항공사(대체항공사)에 이전하기 위한 절차가 개시될 예정이다.

### <대체 항공사 이전절차 개시 노선>

국가	대상 노선	
미국(4개)	인천-시애틀	인천-호놀룰루*
	인천-괌	부산-괌
영국(1개)	인천-런던*	
인도네시아(1개)	인천-자카르타	
국내선(4개)	김포→제주	광주→제주
	제주→김포	제주→광주

\* 「인천-호놀룰루」 노선과 「인천-런던」 노선은 미국 경쟁당국과 영국 경쟁당국에서 각각 에어프레미아(한국, 하계 1슬롯), 버진아틀란틱(영국)을 대체항공사로 지정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이행감독위원회(이하 ‘이감위’)는 2025년 10월 20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10개 노선 이전을 위한 절차를 개시하기로 하였다.

2024년 12월 공정위는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하면서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34개 노선(독과점 노선)에서 대한항공 등이 대체항공사에 공항 슬롯 및 운수권\*을 이전하도록 구조적 조치를 부과하였다.

\* (슬롯) 각 항공당국이 항공사에 배정한 항공기의 출발 또는 도착시간으로, 항공사는 배정받은 시간에 공항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운수권) 특정 국가에 취항할 수 있는 항공사의 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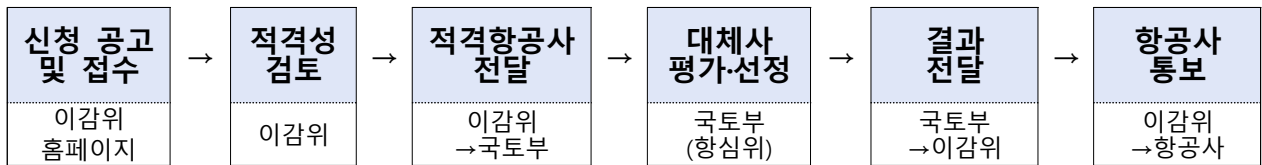
참고로, 2025년 10월 현재까지 인천-LA 노선 등 총 6개 노선\*에서 슬롯·운수권 이전이 완료되었는데, 해당 노선들은 한국 뿐만 아니라 해외 경쟁 당국들에서도 슬롯·운수권 이전에 대한 처분이 있었고, 그에 따라 우선적으로 이전 조치가 이루어진 바 있다.

\* ①인천-LA, ②인천-샌프란시스코, ③인천-바르셀로나, ④인천-프랑크푸르트, ⑤인천-파리, ⑥인천-로마

이번에 슬롯·운수권 이전 절차가 개시되는 노선들은 앞으로 슬롯·운수권을 이전받을 대체 항공사 선정 공고·접수 및 적격성 검토, 국토교통부 항공교통 심의위원회의 대체 항공사 평가·선정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슬롯 및 운수권이 배분된다.

대체 항공사로 선정된 항공사들은 이르면 26년 상반기부터 배분받은 노선에 취항할 수 있다.

< 대체항공사 선정 절차 >



한편, 항공시장의 독과점 우려를 해소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조적 조치를 부과한 34개 노선 중 나머지 18개 노선에 대해서도 2026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슬롯·운수권 이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10개 국내·외 항공 노선의 슬롯·운수권 이전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간 기업결합으로 인해 경쟁 제한 우려가 있던 독과점 노선들에 대체 항공사가 진입됨으로써 항공시장에서의 경쟁이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담당 부서	기업거래결합심사국 기업결합과	책임자	과 장	박설민 (044-200-4630)
		담당자	사무관	정용선 (044-200-4631)
			사무관	남용주 (044-200-4627)



**참고1****2025년 10월 기준 구조적 조치 완료 노선 현황**

연번	국가	구분	대체 항공사 (해외 경쟁당국 조치)
1	미국	인천-LA	에어프레미아(美DOJ)
2		인천-샌프란시스코	에어프레미아(美DOJ) 유나이티드항공(美DOJ)
3	스페인	인천-바르셀로나	티웨이(EC)
4	독일	인천-프랑크푸르트	티웨이(EC)
5	프랑스	인천-파리	티웨이(EC)
6	이탈리아	인천-로마	티웨이(EC)

**참고2****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이행감독위원회 개요**

- (설립배경) 공정위 2022.5.9. 의결 제2022-107호(2024.12.24. 의결 제2024-364호로 변경된 것)에 따라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의 시정명령 이행에 대한 감독 업무 수행을 위해 '25.3.6. 발족
- (구성) 공정거래·소비자항공회계감사 분야 전문가들 중 대한항공 등과 독립하여 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
- (업무) 기업결합일('24.12.12.)로부터 10년간 다음의 사항에 대해 감독하고, 시정조치 이행상황을 매분기 점검하여 공정위에 보고
  - ① 운임·공급좌석 모니터링 및 서비스 질 제고 등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
    - 운임인상 제한, 공급 좌석수 축소 제한, 상품서비스의 불리한 변경 금지, 마일리지 제도의 불리한 변경 금지 등 의무 준수 여부
  - ② 합리적인 마일리지 통합방안 마련 및 제도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 ③ 슬롯·운수권 반납 및 재배분 등 대체항공사 지정에 관한 사항